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 .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개정이유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심의대상에 대한 구체화(안 제4조)
- 나. 용역과제의 선정(안 제5조)
- 다.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6조제2항~제4항)
-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 신설(안 제7조)
- 마. 용역실명제 신설(안 제13조)
- 바. 비밀유지 규정 신설(안 제14조)

3. 조 례 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구미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사무 중 용역과제선정과 관련하여 사전심사를 위한 구미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역”이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 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 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란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이용 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

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제3조(기능) 구미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용역과제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심의대상) ①위원회의 용역과제사전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용역 및 종합기술용역 : 1천만원 이상
2. 공사설계용역 : 3천만원 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사업
2. 국·도비 보조사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3. 천재지변, 재난복구 등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의 용역
4. 시설의 유지·위탁관리 등 계속·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③ 당초 용역심의 결과보다 용역비가 30%이상 증가된 사업, 또는 심의 후 다음 월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었으나 예산 미 편성된 사업은 다시 심의를 받아야한다.

제5조(용역과제의 선정) 용역발주부서에서는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기 연구된 실적 또는 자료와의 중복여부
2.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활용방안

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경제기획국장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경제기획국장, 행정안전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구미시의회의원 2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토목, 건축, 환경, 전자통신 등 관련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전체 위촉

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대상 안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대상 안전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심의대상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

을 둔다.

②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등) ①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4조에 따른 심의대상 용역과제 수행 예산이 계상된 예산안의 승인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실명제) ①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용역발주부서의 국장, 과장·담당관, 계장 및 담당주무관으로 하며, 직속기관은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용역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진행상황의 점검
3.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의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비밀유지) 용역과제 심의 업무에 관하여 위원이나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3조(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 관 부 서		기획예산과
입 안 자	과 장	박 영 일
	담 당	정 윤 호
	담 당 자	정 순 영 (480-6513)